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광 상 의원

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은 오늘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지난 8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

뉴타운 재개발·재건축 정비구역 내에서 철거공사 진행시 비산먼지 발생 및 안전조치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인근의 주민 및 초·중·고교 학생들에게 비산먼지·소음·진동 피해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바,

사업시행인가 시 제출하는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“비산먼지, 통학로 안전 등 인근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여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,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